

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8월 23일
영 동 군 의 회 의 장

1. 조 례 명 :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이유
 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,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3. 주요내용
 -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다양화(안 제7조제31항)
 - 위원 위촉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 반영되도록 아동, 청년, 여성, 노동자, 농어민, 중소기업인, 시민사회단체 등 위촉
 - 위원 사임 등 해촉시 새로운 위원의 임기 규정(안 제8조)
 -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함
 - 위원의 제적·기피·회피 사항은 법을 따르도록 함(안 제9조)
 -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(안 제10조)

4. 의견 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

영동군의회

- 전 화 : 043)740-3048, FAX : (043)740-3039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입법예고 대상 : 「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-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 :
- 의견 제출자 주소 :
-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(찬·반 의견 및 사유)	비고

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”을 “및 제11조제1항 각각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충청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” 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아동, 청년, 여성, 노동자, 농어민, 중소기업인,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.

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은 법 제18조에 따른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” 를 “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

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” 로 한다.

제23조 중 “영동군 기후대응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“ 을 ”영동군 기후대응기금“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,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영동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 ----- 및 제11조제1항 각각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충청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(후단 신설)</p>	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아동, 청년, 여성, 노동자, 농어민, 중소기업인,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
<p>1. 당연직 위원: 군 소속 과장급</p>	<p>1. -----</p>

이상 공무원

2. 위촉직 위원

가. 영동군 환경·시민단체 소속
회원 및 영동군 기술자문위원

나. 기후과학, 온실가스 감축,
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, 에
너지·자원, 녹색기술·녹
색산업, 정의로운 전환 등
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
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8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
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(단서 신설)

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
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
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
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
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
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

2. -----

가. -----

나. -----

제8조(위원의 임기) -----

----- 다만, 위원의
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
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
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
한 사항은 법 제18조에 따른다.

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
증언, 감정, 법률자문을 하거나
하였던 경우

4.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
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
거나 관여하였던 경우

②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
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
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
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
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
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
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
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
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
건의 심의에서 회피(回避)하여
야 한다.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생략)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
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
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
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생략)
② -----
----- 없는 경우에는
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
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

제23조(기후대응기금의 설치) 군 수는 군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동군 기후대응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
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3조(기후대응기금의 설치) --

영동군 기후대응기금 -----

